

인간 대상 연구에서 타자에 대한 책임을 통한 연구자-연구 대상자 관계 윤리 정립

: 레비나스의 타자윤리를 중심으로^{*}

김진경^{**}

-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에서 타자윤리의 |
| II. 인간 대상 연구에서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 의의 |
| 동의와 그 한계 | V. 맺음말 |
| III. 연구자-연구 대상자 관계의 토대로서 타자윤리 | |
-

【국문초록】 인간 대상 연구에서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는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수행을 위한 연구자-연구 대상자 관계 형성의 출발점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동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의 획득이라는 결과가 아닌 과정의 윤리적 수행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 과정에서 요청되는 연구자-연구 대상자 간의 올바른 관계 윤리를 정립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토대로서 레비나스의 타자윤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레비나스는 타자윤리를 통해 자아 중심의 인식을 비판하면서 타자 중심의 관계 정립이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 대상 연구에서 레비나스의 타자윤리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가 어떻게 상대방의 타자성을 인식하고 타자에 대한 책임을 수용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며, 이를 통해 그들 각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 및 의무를 행함과 동시에 연구 목적 성취라는 공동의 유대성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윤리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색인어】 인간 대상 연구,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 연구자-연구 대상자 관계, 레비나스, 타자윤리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8018582)

**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051-200-7139, regina@dau.ac.kr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중요한 미래 사업으로 여겨지고 있는 바이오산업과 신약 및 의료 기기 개발은 연구 결과물이 인간에게 적합한 효과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시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해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전부 개정으로 인해 인간 대상 연구¹⁾의 시행 범위가 대학 등의 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과학행동 연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면서, 현재 인간 대상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수행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인간 대상 연구의 범주가 확대되면서 오늘날 연구 과정에 참여하는 인간 연구 대상자의 생명보호와 안전 그리고 그들의 자율성 존중은 더욱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 대상자를 연구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은 연구 전반에 걸쳐 취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출발은 무엇보다도 연구 시행 이전에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로부터 획득해야만 하는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를 출발점으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인간 대상 연구에서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는 연구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연구 전반에 대해 이해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인 동시에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연구 기간 동안 연구 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할 것을 맹세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점에서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는 연구 기간 동안 윤리적 행동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한다.²⁾ 다시 말해 인간 대상 연구에서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는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수행을 위한 연구자-연구 대상자 관계

형성의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 대상 연구에서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가 연구 수행을 위한 법적·윤리적 주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에서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 과정은 연구 대상자의 생명 및 안전 그리고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써 그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면 연구 대상자들은 동의 과정에서 연구자와의 연구 관련 정보에 대한 적절한 소통의 부재로 인해 동의를 직접 작성한 이후에도 연구의 목적과 절차 및 자신의 참여 의미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연구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동의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가 이를 이해할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는 그것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 대상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가 제공한 동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의 획득이라는 결과가 아닌 과정의 윤리적 수행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는 형식적인 윤리 기준을 넘어서 진정으로 연구 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의 과정에서 연구자-연구 대상자 간의 올바른 관계 윤리 정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자아 중심이 아닌 타자 중심의, 타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의 타자 윤리를 통해 인간 대상 연구, 특히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 과정에서 올바른 연구자-연구 대상자 관계 형성의 윤리적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인간 대상 연구에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인간대상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로 정의된다. (법 2 제2조 1호)

2) Javad Parvizi et al, Informed consent: Is it always necessary?, Care Injured 39, 2008, p. 651.

대한 이해를 통해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의 의미와 그 한계점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연구자-연구 대상자 간의 올바른 관계 윤리를 정립을 위한 토대로서 레비나스의 타자윤리를 고찰해 보고 마지막으로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 과정에서 타자윤리가 갖는 의의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인간 대상 연구에서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와 그 한계

인간 대상 연구는 개별 환자의 위험과 이익을 토대로 하는 임상 의학과 달리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 대상자의 위험과 이익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사회적 이익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임상 의학과 의 비교를 통해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행과정으로서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가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이것이 가지는 한계점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의 이해

임상 의학은 개별 환자의 웰빙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인간 대상 연구는 일반적인 지식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임상 의학에서 의사들은 자신의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기본적인 충실성을 가져야 하며 환자에 대한 진단 방법과 치료 방법의 잠재적 이익은 환자 자신에게 부과되는 위험을 능가해야만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인간 대상 연구에서 연구의 목적, 즉 일반화할 수 있는 의학 지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방법들을 통해 가설들을 정확히 검증

하는 연구 프로토콜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과학적·윤리적 연구 수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때 연구 프로토콜의 윤리적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사회에 대한 잠재적 이익과 함께 참여하는 연구 대상자에 대한 위험과 가능한 이익에 대한 고려가 된다.³⁾ 이러한 점에서 임상 의학과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적 기준은 구분된다. 즉 임상 의학의 윤리적 정당성은 개별 환자에 대한 위험과 이익의 평가로 제한되는 반면 인간 대상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에 대한 위험과 이익의 가능성은 물론 사회에 대한 잠재적 이익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연구 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은 인간 대상 연구에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진다. 예를 들면, 트루드 레먼스(Trude Lemmens) 그리고 리톤과 밀러(Litton & Miller)는 임상적 치료와 연구가 다른 목적과 실천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차이점들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행하도록 하는 의사들의 탁월한 의무를 회피하도록 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⁴⁾ 이러한 점에서 임상 의학에서 개별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별 환자의 동의가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 대상자의 안전과 연구 과정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인간 대상 연구에서도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는 연구 목적의 정당성, 합리적 대안들, 적절한 위험들 및 이익들, 수용가능한 결정의 불확실성 그리고 연구 대상자의 의사결정능력과 이해력 등을 통해 획득되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적 정당성은 단지 연구 대상자의 위험 및 이익만이 아니라 이것들과 사회의 잠재적 위험 및 이익과의 균형

3) Paul Litton & Franklin G. Miller, A Normative Justification for Distinguishing the Ethics of Clinical Research from the Ethics of Medical Care, *The Journal of Law, Medicine & Ethics* Fall, 2005, pp. 566-567.

4) Paul Litton & Franklin G. Miller, 위의 논문, p. 567.

을 통해 확보되어지기 때문에 인간 대상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에 의한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는 더욱 중요한 과정으로 여겨진다.

물론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가 응급 연구 혹은 연구 대상자에 대한 최소한의 위험을 포함한 연구 등에서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은 연구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적절한 규정들을 위한 가치 있는 도구로서 여겨진다. 다시 말해 인간 대상 연구에서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 과정을 통해 연구 대상자는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자신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연구자는 동의 과정을 통해 안전하고 윤리적 연구를 수행할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로부터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동의를 획득하는 것은 세계의사회의 〈헬싱키선언〉이나 국제의학기구협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의학연구에 대한 국제윤리 가이드라인〉과 같은 연구 관련 국제규범에서뿐만 아니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같은 연구 관련 국내법에서도 매우 강조되고 있다.⁵⁾

일반적으로 인간 대상 연구에서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⁶⁾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첫째는 연구 목적이 사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선행의 원칙이다. 둘째는 연구 대상자는 인종, 나이, 성별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존중받아야만 하며, 어떤 대상자들은 후견인 혹은 돌봄 제공자의 도움을 통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인간 존중의 원칙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과 이익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어야만 한다는

정의의 원칙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동의를 서면으로 획득하기에 앞서 연구대상자에게 “인간 대상 연구의 목적, 연구대상자의 참여 기간, 절차 및 방법,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연구 참여에 따른 소실에 대한 보상,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 철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법 제16조 제4항), 이러한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연구자의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16조 제1항).⁷⁾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는 연구의 윤리성 확보를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는 연구자의 책임 혹은 연구 대상자의 동의 능력 등의 어느 한 측면에 대한 강조에 의해서 아니라 연구자-연구 대상자의 올바른 윤리적 관계를 통해서만 그것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동의 형식 그 자체만으로는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대상 연구에서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기존의 입장이 가지는 한계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인간 대상 연구에서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 과정이 가지는 한계점을 자율성과 선행에 근거한 입장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5) 김은애, 인간대상연구에 있어 동의 관련 규범적 문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의 동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5권 제2호, 2014, pp. 3-4.

6) Javad Parvizi et al., 앞의 논문, pp. 652-653 참조.

7) 김은애, 위의 논문, p. 8 참조.

2.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의 한계

먼저 자율성에 기초한 입장에 따르면, 자율적인 개인은 스스로 선택한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한다. 즉 자율적인 사람은 이해, 추론, 숙고, 독립적인 선택과 같은 자기 통제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자신의 신체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같은 입장에 따르면, 인간 대상 연구의 법과 규정에 있어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는 연구 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장치로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다니엘 켈러한(Daniel Callahan)은 자율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를 미쳐 날뛰는 자율성(autonomy run amok)이라고 비판하며 “선택의 올바름과 그림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단 하나의 요인으로 환원될 때 도덕성은 빈곤해질 것이다”⁸⁾라고 한다. 다시 말해 오늘날 자율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인간 대상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지나치게 절대적 우위를 가지며, 이를 통해서 자율성 이외의 인간이 추구하는 다른 많은 윤리적 가치들이 손상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에서 인간적 선과 가치, 사회적 선, 인간 및 사회적 관계의 가치, 인간의 복지, 좋은 삶에 대한 고려는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인간은 자기 충족적이고 고립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다양한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어떠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자율성에 기초한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는 취약한 연구 대상자 연구 및 연구 대상자에게 최소

한의 위험을 부과하는 연구 등에서는 쉽게 적용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인간 대상 연구에서는 인종, 교육 수준, 정신적 능력, 임신부, 감금된 죄수 등과 같이 개인의 자율성에 영향을 주는 많은 원인들에 의해 완벽하게 자율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연구 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연구 대상자의 자율성에 기초한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는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는 완벽한 기준이 될 수 없게 된다.

다음으로 선행에 기초한 입장에 따르면,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 대상자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피터 클락(Peter Clark)은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의 최선의 이익으로 행동할 윤리적 책임감을 가진다.”⁹⁾고 한다. 의료에서는 히포크라테스 전통으로 말미암아 의사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환자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환자에 해가 될 행위를 삼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믿게 되었으며, 우리는 이를 흔히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인간 대상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연구 대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윤리적 토대로 온정적 간섭주의가 주장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간 대상 연구에서 온정적 간섭주의는 기본적으로 연구 대상자들에게 직접적 이익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치료적 범주와 그렇지 않은 비치료적 범주와의 구분을 통해 설명된다. 여기서 참여자들에게 최소한의 위험보다 더 큰 위험을 부과하는 비치료적 시험의 경우, 온정적 간섭주의가 개입될 수 있다.¹⁰⁾ 또한 위험과 잠재적 이익의 균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치료적 시험의 경우에도 온정적 간섭주의가 개입될 수 있다.¹¹⁾ 이렇듯 인간 대상 연구에서 온정적 간섭주의는 연구자에 의한

8) R. A. McCormick, Bioethics: A Moral Vacuum?, America 180(15), 1999, p. 9.

9) Paul Litton & Franklin G. Miller, 앞의 논문, p. 566.

10) Lynn A. Jansen & Steven Wall, Paternalism and Fairness in Clinical Research, Bioethics 23(3), 2009, p. 173.

11) Lynn A. Jansen & Steven Wall, 위의 논문, p. 173.

제한이 연구 대상자의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시킬 것이라는 토대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 대상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는 연구에 참여할 기본적인 자유권이 없다는 것과 분배 정의 등에 대한 고려는 연구자의 온정적 간섭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인간 대상 연구에서 일부 연구 참여자는 비록 연구가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타적인 이유로 시험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이때 연구 대상자가 이타심에 근거하여 연구 참여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사실이 그들이 올바른 의사결정능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연구자의 입장에서 연구 대상자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온정적 간섭주의는 이와 같은 이타주의적 동기에 의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결정능력을 가진 연구 대상자의 연구 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에 근거하여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를 바라보는 입장은 동의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이 있을 수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자신이 내린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결정이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선행에 의한 연구 참여에의 통제에 이타주의에 입각하여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 대상자의 능력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둘째, 연구 대상자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적절한 안전 지침이 있는 연구에 연구 대상자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연구에 대한 위험과 이익을 이해하고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를 한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연구 대상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선행에 기초한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는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수행을 위한 절차로서 그 한계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가 앞서 제시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며 연구의 윤리적 수행을 보장하는 절차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자-연구대상자의 올바른 관계 윤리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인간 대상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수행을 위해 요청되는 연구자-연구 대상자 관계 형성을 위한 토대로서 타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를 제안하고자 하며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고찰해 볼 것이다.

III. 연구자-연구 대상자 관계의 토대로서 타자윤리

인간 대상 연구의 비윤리적 수행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로 인해 연구 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 과정에서 윤리적 행동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연구 대상자를 보호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가 요청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의 정당성 확보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동의의 결과가 아닌 과정, 즉 연구자-연구 대상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동의의 절차적 정당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왜냐하면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에서 연구자-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관계 형성은 동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레비나스는 타자윤리를 통해 자아 중심의 인식을 비판하면서 타자 중심의 관계 정립이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타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레비나스의 타자윤리를 통해 연구자-연구 대상자 관계 윤

리를 정립해 보고자 하며, 이를 위한 과정으로서 아래에서는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에 대해 면밀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타자성 인식

데카르트 이후 서양의 근대 철학은 분석하고 사유하는 주체로서 독립된 자아를 중시해왔다.¹²⁾ 자아를 나타내는 동일자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동일시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자기 이외의 것 즉 타자를 자기 안으로 흡수한다.¹³⁾ 이것이 바로 동일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자기 중심적 자아는 외부세계의 모든 다양성과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의 사유의 대상으로 변화시키면서 자기화한다. 레비나스의 시각에서 서양 존재론의 자아는 자기 폐쇄적이고 자족적이며 유아론적인 자아로서 자아는 변질에 있어서까지 동일하게 나타난다.¹⁴⁾ 그러나 인간의 동등성과 보편성을 강조하는 이 같은 방식은 인간의 고유성을 무시한다.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독립된 자아는 자기와 다른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 결과 인간은 언제나 자아를 중심으로 다른 인간을 해석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려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간은 나와 타인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닌 도덕성이 결여된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세계를 가짐과 동시에 타인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¹⁵⁾ 레비나스에 따르면 이와 같은 자아는 타자와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만 자아 중심의 전체성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레비나스에게 있어서 타자는 자아 밖에 외재적으로 존재하는 외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나에게로 통합

될 수 없는 절대적인 다름, 절대적인 타자성을 지닌다. 다시 말해 타자는 외재성이며, 관계에 있어서는 무한성이라는 이념으로 드러난다. 무한의 이념은 타자와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타자의 무한성은 기존의 자아 중심의 동일화 과정을 통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절대적으로 외재적 존재에 접근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타자는 결코 나에게로 환원될 수 없으며 언제나 나의 이해를 거부하고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며 이를 통해 무한의 타자성을 유지하게 된다.

2. 타자와의 대면

레비나스에 있어서 자아와 타자의 만남은 타자의 '얼굴' 드러냄을 통해 가능하다. 타자의 얼굴은 존재자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바라보고 호소하고 스스로 표현하는 얼굴과의 만남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물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을 열어 준다. 이러한 점에서 레비나스에서 타자의 얼굴이 갖는 의미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타자의 얼굴은 이해와 재현, 범주와 개념적 틀에 포섭되지 않는, 타자의 환원 불가능한 유일성을 지시한다. 둘째, 타자의 얼굴은 나와 타자의 만남의 직접성을 의미한다. 셋째, 타자의 얼굴은 그의 무방비성과 상처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타자의 얼굴은 나의 자족성과 예고이즘을 깨뜨리는 윤리적 명령이자, 타자를 책임지라는 윤리적 요구다.¹⁶⁾

12) 조연희, 레비나스 타자윤리와 정의적 도덕성, 윤리철학교육 13, 2010, p. 128.

13) 김연숙, E. Levinas 他者倫理에서 倫理的 疏通에 관한 연구: 얼굴-만남대화, 국민윤리연구 44, 한국국민윤리학회, 2000, p. 85.

14) 권수경, 열림과 공존: 엠마누엘 레비나스에게서의 타자성 연구, 프랑스학연구 33, 2005, p. 75.

15) 조연희, 앞의 논문, p. 128.

타자의 현현은 타인이 그 스스로 벌거벗은 얼굴을 나타내는 것이다. 얼굴이 스스로 내보이는 방식을 계서라고 하는데, 얼굴의 자기 계시 또는 자기 표현은 나의 입장과 상관없이 스스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다. 타자의 얼굴이 가진 도덕적 호소력은 상처받을 수 있고 외부적인 힘에 대해 저항이 불가능한 얼굴이 가지는 힘으로부터 나온다. 타자의 얼굴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곤궁과 결핍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타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깨닫는 것은 더 이상 인식론적 문제가 아닌 것으로, 타인의 얼굴에 응답하는 것, 타인을 환영하는 것, 타인에게 말을 걸고 대화하는 것이다.¹⁷⁾ 이러한 점에서 타자의 얼굴 그 자체가 하나의 윤리적 요청인 것으로, 얼굴의 등장이야말로 곧 타자를 대면하거나 마주할 수 있는 윤리의 시작인 것이다.¹⁸⁾

이러한 대면적 만남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관계, 즉 타자와 맺는 유일한 근원적 관계인 책임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 대면적 만남에서 타자의 얼굴은 직접적이고 극단적인 노출이자 완전한 벌거벗음이다. 따라서 대면적 만남에서 타자가 나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나의 응답을 요청하는 상황 속에서 인간의 권리는 타자의 권리로 나타난다. 여기서 타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타자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 그의 타자성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면적 만남을 통해 형성되는 자아-타자 간의 윤리적 관계는 자아와 타자 사이의 상호적, 호혜적 관계가 아니라 자아가 타자를 통해 나아가는 비대칭적 관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윤리적 관계에서는 결국 나에게만 의무가 부과된다.

3. 타자에 대한 책임의 수용

그렇다면 타자를 위한 책임은 어떻게 가능한가? 레비나스에 따르면 인간은 타자와의 대면의 순간에 타자에 대한 욕망이 생기게 된다. 이는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고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욕망인 것으로서 나의 정체성은 책임성에서 생긴다. 따라서 레비나스의 책임은 온전히 타인의 부름에 직면해서, 그 부름에 응답해서 수동적으로 지워진 책임이다. 타인에 대한 나의 책임은 내가 주도권을 쥐고 스스로 나서기 전에, 나의 존재 이전에, 나의 의식 이전에, 벌써 나에게 침투했다.¹⁹⁾ 이와 같이 타인에 의해 창조된 책임을 타인에 의한, 타인에 대한 책임이라고 한다. 그리고 타자에 의해 책임적 존재로 지정받은 내가 타자를 위한 책임적 존재로 세워지는 모습을 레비나스는 '대속'이라 부른다.²⁰⁾ 레비나스가 제시하는 타자에 대한 대속적 책임은 타인을 위한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타자에 의해 나타나는 양심에 대한 일깨움을 의미한다.

인간 대상 연구의 구체적인 실천에서 연구자와 연구대상자는 서로 다른 입장에 처해 있는 존재로서 동일자로 환원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 수행에 있어 연구자와 연구대상자는 상대방의 타자성을 인식하고 타자에 대한 책임에 근거하여 자신의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응답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타자와의 대면적 대화는 연구자-연구대상자 간의 소통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적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연구자-연구대상자 관계에서

16) 김도형, 레비나스의 인권론 연구: 타인의 권리 그리고 타인의 인간주의에 관하여, 대동철학 60, 2012, pp. 7-7 참조.

17) 김연숙, 앞의 논문, p. 92.

18) 조연희, 위의 논문, p. 135.

19) E. Levens, Humanisme de autre homme, Montpellier: Fata Morgana, 1972, pp. 74-75 참조, 강영안, 책임으로서의 윤리: 레비나스의 윤리적 주체 개념, 철학 81, 2004, p. 73 재인용.

20) 강영안, 위의 논문, p. 75.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가 어떻게 상대방을 수용하고 바라보며 자신의 권리 및 의무를 다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연구는 궁극적으로 과학적-윤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인간 대상 연구, 특히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에서 연구자-연구 대상자 관계 정립에 있어 타자윤리의 갖는 의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IV.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에서 타자윤리의 의의

인간 대상 연구에서 연구자-연구 대상자는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 과정을 통해 윤리적 관계를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타자에 대한 책임에 근거하여 연구자-연구 대상자가 맺는 윤리적 관계로서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는 연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타자에게 목소리를 부여할 수 있을 때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의 연구자-연구 대상자 관계에서 타자윤리의 갖는 의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할 것이다.

1. 연구자-연구 대상자 관계에서 타자 인식의 요청

인간 대상 연구에서 연구자는 일반적인 지식의 도출이라는 연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 대상자의 권리, 안전 및 자율성을 존중하기

보다는 자신의 입장에서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의 성공을 달성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볼 때 연구 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 채로 연구가 진행되어 연구 대상자는 물론 연구 자체에 커다란 위험을 가져온 비윤리적 사례들이 흔하게 보고되어 왔다. 이는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를 의미를 가진 존재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연구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 대상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의 시작은 1947년 뉘렘베르크 강령에 토대를 가지는데, 이 강령은 나치 의사들이 집중 캠프에 있었던 적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끔찍한 의학적 실험 남용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만들어지게 되었다. 뉘렘베르크 강령은 인간 연구에 포함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최초의 법적 시도였다.²¹⁾ 그리고 1964년의 헬싱키 선언은 세계의사협회에 의해서 초안이 마련된 것으로서, 이것은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에 대한 뉘렘베르크 강령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뉘렘베르크 강령과 헬싱키 선언을 통해 인간 대상 연구에서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 발생한 연구 대상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했던 비윤리적 사례들은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32년에 시작되어 1972까지 40년간 미 공중 위생국의 의사들에 의해 미국에 살고 있는 흑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터스키기 매독 연구²²⁾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21) Javad Parvizi et al. 앞의 논문, 2008, p.

22) 1932년 미국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Service)은 터스키기 연구소의 본거지인 앨라배마 주 메이론 군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자들이 매독의 발생경로에 대한 연구에 참여시켰다. 대략 623명의 남자들이 무료 건강진단 및 혈액 검사를 제공한다는 빌미로 모집

않았고 치료약이 개발된 이후에도 연구 대상자를 기만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Stanley Milgram)의 실험²³⁾은 사회행동과학 연구에서 연구의 비윤리적 수행으로 인해 연구 대상자의 자율성과 권리가 보호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진다. 이 사례에서 연구자는 처벌이 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연구 목적을 연구 대상자에게 설명하였지만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연구의 진정한 목적이 학습자들의 고통이 눈에 보이는 경우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계속할 것인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 결과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불안을 겪게 되었다고 한다.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사례 모두 인간 대상 연구에서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가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위의 사례에서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 대상자의 고유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연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으로서 전락시켜 버림으로써 연구의 윤리성을 훼손시켰다.

인간 대상 연구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와 더불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개별 인간의 도덕 삶의 맥락 속에 놓여진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자

와 연구 대상자는 동일자로 보편화할 수 없는 독특한 개별자로서 나에게로 통합할 수 없는 절대적 다름을 지닌 타자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간 대상 연구에서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를 연구 대상자 중심의 자율성에 근거한 입장 또는 연구자 중심의 선행에 근거한 입장에 토대를 두는 순간 레비나스가 제기했던 동일자에 의한 자기 동일화가 행해지면서 연구자 혹은 연구 대상자는 상대방을 자기 안으로 흡수시켜 버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에서 연구자-연구 대상자는 상대방을 나에게로 통합할 수 없는 다양성과 변화를 가진 고유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 대상 연구에서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여부는 연구의 정당성과 윤리성을 보장하는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 또한 자신이 참여하는 연구의 연구자를 개별자로 이해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연구에 참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간 대상 연구에서 연구자-연구 대상자 상호간의 타자성에 대한 인식은 그들로 하여금 연구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 및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타자의 현현을 통한 연구자-연구대상자 마주보기

인간 대상 연구는 연구 목적 및 수행 과정의 예측 불

되었다. 이들 중 대략 절반은 연구 시작부터 매독에 걸려 있었으나 누구도 그러한 사실을 듣지 못했다. 연구자들은 그 남자들이 죽을 때까지 눈여겨보다가 결정적인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부검을 행하고 싶었다. 따라서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 매독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이 널리 가용되었지만 어느 치료법도 연구에 참여한 남자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았다. 티모시 F. 머피, 강준호, 생명의학 연구윤리의 사례연구, 서광사, 2008, pp. 51-52 참조

- 23) “교사”라고 불리는 피험자들은 “학습자”라고 불리는 다른 피험자들에게 낱말 짝들을 말해주고 나서, 만일 학습자들이 그 짝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전기충격으로 학습자들에게 벌을 가했다. 전기 충격은 한 낱말 짝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때마다 한 칸씩 증가했다. 교사는 옆방에 있는 학습자들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사실 학습자들은 전기충격 장치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일부러 정확한 낱말 짝을 말하지 않았고 전기 충격에 반응하는 시늉을 했다. 연구의 모든 지점에서 밀그램은 교사들에게 학습자들의 반응을 무시하고 실험을 계속하라고 지시했으며, 대부분의 교사들은 지시받은 대로 행동했다. 티모시 F. 머피, 위의 책, pp. 118-119 참조.

가능성, 결과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연구 대상자가 받게 될 비윤리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를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연구의 내용 및 위험성에 대한 연구자에 의한 충분한 정보의 적절한 제공, 연구 대상자의 정보 이해 능력 검증 및 자발적인 참여 의사가 보장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발성은 투옥, 빈곤 혹은 개인적 의존과 같은 조건들에 의해 위태롭게 될 수 있고, 타당성은 불충분한 정보, 부적절한 이해 혹은 의사결정을 내림에 있어서의 무능력에 의해서 손상될 수 있다.²⁴⁾

실제로 연구 대상자는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서에 서명을 한 후에도 자신이 단지 연구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례들은 흔히 발생한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데 연구자가 환자에게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적절하게 소통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더 심각하게는 의사소통을 위한 시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다.²⁵⁾ 이러한 점에서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를 위한 과정으로 연구자-연구 대상자간의 대면을 통한 마주보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 과정은 연구자-연구 대상자 관계가 형성되는 최초의 단계로서 이들 간의 마주보기를 통해 윤리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동일자와 타자의 만남은 얼굴 대 얼굴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 타자의 얼굴은 나의 표상과 인식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존재하고 그 자체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는 타인의 존재방식이다.²⁶⁾ 이러한 점에서 타자는 얼굴의 현현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책임감을 이끌어낸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동일자가 타자와의 대면을 통해 타자에 대한 의무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에서 연구자의 충분한 설명과 이에 대한 연구 대상자의 이해 및 자발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때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의 대면 과정에서의 상호간의 얼굴 현현을 통해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가 자신의 존재 방식과 의미를 여실히 드러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위한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해야 할 경우,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 대상자와의 대면에서 그들의 동의 능력을 판단하고 그들의 이해도 및 자발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연구 대상자도 단지 문서로 연구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것보다 연구자와의 대면을 통해 연구 목적 및 방향에 대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며 의문 사항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감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레비나스가 제시한 바와 같이 동의 과정에서 연구자와 연구대상자는 대면적 만남을 통해 윤리적 관계를 맺게 되며, 이를 토대로 상호간의 의무와 책임의 관계를 형성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3. 타자에 대한 책임 수용에 근거한 동의 획득

레비나스는 주체를 타자와 맺는 책임의 관계 속에서 수립한다. 레비나스는 가치의 원천이 타자라고, 또 타자에 대한 책임이라고 주장한다.²⁷⁾ 이때 레비나스적 책임은 타자를 위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24) Hanfried Helmchen, Ethics of clinical research with mentally ill persons, Eur Arch Psychiatry Clin Neurosci 262, 2012, p. 442.

25) Nusrat Shafiq & Samir Malhotra, Ethics in Clinical research: Need for assessing comprehension of informed consent form?, Contemporary Clinical Trials 32, 2011, p. 169.

26) 의사 그리고 타자로서 환자: E. Levinas를 중심으로, 김진경, 철학논총 45, 새한철학회, 2006, p. 111.

만, 결국 그것의 구체적인 형태는 타자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의 책임일 것이다.²⁸⁾ 자아와 타자간의 이러한 책임의 관계는 '대면적 만남'을 통해 시작되며, 이 대면적 만남은 '말하기'로부터 출발한다. 여기서 얼굴과 말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얼굴을 가진 타자가 없다면 말하기는 시작될 수 없고 의미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즉, 말하기는 홀로 행해질 수 없으며, 언제나 나와 너 혹은 다수의 주체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레비나스는 사람에게 말을 걸고 응답하는 대화의 틈을 가로질러 형성되는 것이 윤리학이라고 말한다.²⁹⁾ 이때 말하기의 방식은 타자와 더불어 말을 나누면서도 그를 이미 안다고 생각하여 그를 대면하지 않고, 내 안에서만 받아들이며, 타자로서의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수사학이 아닌 타자와 진정으로 마주하면서 그와 근원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대면적 대화가 되어야만 한다. 대면적 대화에서 말하기의 현상은 타자에게 응답하는 주체의 수동성을 보여준다. 여기서 말하기의 수동성은 '주체없이 언어가 말한다'와 같은 구조적 의미에서의 수동성이 아니라 타자의 도덕적 요청에 따른다는 응답의 책임성으로부터 오는 수동성이다.³⁰⁾ 이러한 대면적 대화를 통해 타자의 타자성을 유지시키며 보편성 혹은 일반성을 공유하며 진실한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는 것이다.

타자 윤리에 토대를 둔 연구자-연구 대상자의 관계 윤리의 출발점은 차이에 대한 인식을 통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나에게로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게 의미와 목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대상 연구의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는 연구

자-연구 대상자 간의 적절한 의사소통 기술을 필요로 한다. 구체적으로 동의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에 대한 정보를 연구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해야 할 것이며 연구자에 의한 연구 대상자의 이해도 확인 및 점검 과정 또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연구자 및 연구 대상자가 상대방의 타자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이해는 어렵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연구 대상자가 연구에 대해 여전히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윤리적인 동의 과정이 될 수 없다. 또한 연구자의 입장에서 연구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요청된다. 왜냐하면 연구 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연구 대상자의 등록이 중요하며 동의 과정의 대면을 통해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의 정보를 얻게 된다. 구체적으로 동의 과정에서의 질문과 답변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가 선정 기준에 부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에서 연구자에 의한 정보의 제공과 연구 대상자의 정보의 이해는 엄연히 다른 문제이며 대면적 대화를 시도하고 타자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동의는 무의미한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 과정에서 연구자-연구 대상자가 대면적 대화를 통해 타자의 타자성을 인식하고 타자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며 이에 대해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해 인간 대상 연구에서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를 통한 연구자-

27) E. Levinas, The contemporary Criticism of the Idea of Value and the Prospects for Humanism, in Value and Values in Evolution, ed. E. A. Maziarz, Gordon and Breach, 1979, p. 185. 참조, 김도형, 앞의 논문, p. 18 재인용.

28) 변순용, 휴머니즘, 타자와 나: E. Levinas를 중심으로, 철학 연구 59, 2002, p. 227.

29) E. Levinas, Ethique and Infini, R. A. Cohen trans. Pittsburg: Duquesne University Press, 1985, p. 12, 김연숙, 앞의 논문, p. 94 재인용.

30) 조연희, 앞의 논문, p. 136.

연구 대상자의 관계 윤리의 정립은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로 하여금 차이에 대한 인식을 통한 상호 간의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 결과 타자에 의해 나타나는 나의 양심을 통해 연구 목적 성취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할 수 있게 할 것이다.

V. 맺음말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 대상 연구에서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는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수행을 위한 연구자-연구 대상자 관계 형성의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동의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자-연구 대상자의 관계 윤리가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그 토대로서 레비나스의 타자윤리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타자는 결코 나에게로 환원될 수 없으며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는 무한의 타자성을 지니는 존재로서, 자이는 타자와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만 자아 중심의 전체성을 벗어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아와 타자의 만남은 타자의 얼굴 현현을 통해 가능한데, 타자의 얼굴 그 자체는 하나의 윤리적 요청으로서 얼굴의 등장이야말로 곧 타자를 대면하거나 마주할 수 있는 윤리의 시작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대면적 만남을 통해 자이는 타자와 맺는 유일한 근원적 관

계인 책임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때 레비나스가 제시하는 타자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타인의 부름에 직면해서, 그 부름에 응답해서 타자에 의해 수동적으로 지워진 책임이다. 바꾸어 말하면 타자에 대한 책임은 타인을 위한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는 것으로서 이는 타자에 의해 나타나는 양심에 대한 일깨움을 의미한다.

인간 대상 연구의 구체적인 실천에서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는 서로 다른 입장에 처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 수행에 있어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는 상대방을 절대로 자아로 동일화시킬 수 없는 고유성을 가진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가 상대방의 타자성을 인식하고 타자에 대한 책임에 근거하여 자신의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고유성에 따라 응답하고자 하는 것은 연구의 수행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 과정에서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는 대면적 만남을 통해 타자의 타자성과 타자로부터 주어진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윤리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자-연구 대상자 관계에서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가 어떻게 상대방을 수용하고 바라보며 자신의 권리 및 책임을 다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대를 마련해 줌으로써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수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Abstract]

**The Ethics of Relation between the Researcher and the Subject in the Human Subject Research on the Basis of Responsibility for the Other
: Focusing on Levinas' Ethics of the other***

Kim Jin Kyong**

In the human subject research, informed consent is the starting point of relationship between the researcher and the subject based on which that research is conducted in scientific and ethical manners. However, the more important thing is that the legitimacy of the consent depends on not just getting it, but how much ethically the human subject research is to be conduc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right ethics of relation between the researcher and the subject, which is required for the latter's consent based on sufficient information, with reference to Levinas' Ethics of the Other. According to his Ethics of the Other, Levinas criticizes egocentric awareness and claims that the other-centered relationship can provide a solution to ethical issues. In conclusion, Levinas' Ethics of the Other suggests how the researcher and the subject should be aware of the other's otherness and responsible for that party in the human subject research. With the awareness and the responsibility, both of the parties can do their respective rights and duties. And at the same time, they can work together on the human subject research in scientific and ethical manners as they unite with each other under a common destination, that is, achieving the purpose of that research.

Key words: Human subjects research, Informed consent, Relationship between the researcher and the subject, Levinas, Ethics of the other

투고(접수)일(2014년 11월 28일), 심사(수정)일(1차: 2014년 12월 8일, 2차: 12월 21일), 게재확정일(2014년 12월 28일)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4S1A5A8018582)

** Department of Philosophy & Biomedical Ethics, College of Humanities, Dong-A University